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29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허성무 · 이재강 · 박은정
박수현 · 손 술 · 임미애
김재원 · 김영호 · 김동아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합친 수송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하면서 대중교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상당수는 기사 소유 차량을 면허권을 가진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입제로 인해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매달 내야 하는 지입료와 노선비라는 명목의 권리금까지 부담하고 있음. 심지어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량을 처분해도 지입차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법 지입제의 경우 지입차주도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와 같이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전세버스

기사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지입제도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3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차주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여 차주 동의없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차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 신설, 제14조제11항 신설, 제21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신설, 제89조의4 신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다른”을 “제12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기나”를 “제12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기나”를 “제12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나”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현물출자에 따른 경영의 일부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

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의3(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

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4(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여객운송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제85조제1항 각 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수탁차주였던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①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6(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
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
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에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운송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
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
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
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
정할 수 있다.

⑯ 운송사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송사업자에게”를 “운송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운수사업자에게”를 “운수사업자(제50조제5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가”를 “운송사업자등이”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가”를 “운송사업자등이”로 한다.

제9장에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4(압류금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5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2항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의3. 제1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3의2. 제21조제14항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운송사업자

3의3. 제2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운송사업자

3의4. 제21조제16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3의5. 제2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운송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u>다른</u>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제12조의2에 <u>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u> -----
② 운송사업자는 <u>자기나</u>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2조의2에 <u>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나</u> -----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제12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나-----

제12조의2(현물출자에 따른 경영의 일부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신 설>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의3(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

(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

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

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

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위·수탁계약상의 월지

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

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12조의2 제3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

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

·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

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

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

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신 설>

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
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
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
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
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
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차주
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
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
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4(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
·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여객운송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제85조제1항 각 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위·수탁차주의 고의에

<신 설>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수탁차주였던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①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신 설>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생 략)
<신 설>

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6(위·수탁계약의 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위·수
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
른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
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
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
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
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⑬ (생략)

<신설>

<신설>

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운송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

<신 설>

<신 설>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생략)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⑯ 운송사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략)

⑦ ~ ⑨ (생략)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⑥ -----

--운송사업자등에게-----

1. ~ 4.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

-----운수사업자(제50조 제5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

-----운송사업자등이-----

-----.

1. ~ 5.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

-----운송사업

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자등이-----

-----.

1. ~ 5. (현행과 같음)

제89조의4(압류금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5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u><신 설></u>	<u>1의3. 제1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u>
2.·3. (생략) <u><신 설></u>	2.·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1조제14항을 위반하여</u>
<u><신 설></u>	<u>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운송사업자</u>
<u><신 설></u>	<u>3의3. 제2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운송사업자</u>
<u><신 설></u>	<u>3의4. 제21조제16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u>
<u><신 설></u>	<u>3의5. 제2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u>

	<u>준 운송사업자</u>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